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호 / 제출년월일 : 1995. 7.

제 출 자: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광역시의 부시장을 2인을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안 제2조)
 -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 년이상재직한 자
 - 4.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 나. 정무부시장의 임용 결격사유는 일반직공무원과 같음(안 제2조, 단서)
- 다. 정무부시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함. (안 제2조, 단서)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별첨)

- ㅇ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ㅇ 대전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정무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대전광역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 한 자는 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 년이상 재직한자
- 4.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ㅇ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제101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수 : 2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인으로 한다.

②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2 인이상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ㅇ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부시장·부지사의 정수와 직급)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으로한다.

②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법 제10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대전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근무상한 연령)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995년 7월13일 내 무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7월 8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1995년 7월 10일

3. 상정일자 : 제4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1995. 7. 13)

상정, 심의,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1.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광역시의 부시장을 2인을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 가.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 (안 제2조)
 -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 4.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 나. 정무부시장의 임용 결격사유는 일반직공무원과 같음.(안 제2 조.단서)
- 다. 정무부시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함. (안 제2조, 단서)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이학구)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의거 광역시의 부시장을 2인을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정무부시장에 대하여 그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은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와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주민의 선 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와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하였음. 이와함께 정무부시장의 임용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일반직공무원과 같도록 하였으며, 근무상한 연령 역시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였음.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련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정무직부시장에 대한 그 자격등을 정한 것이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행정경험이나 경력등을 중시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끈다는 취지라 보겠음.

다만, 자격범위에 있어서 공직경험자나 선거에 의한 선출자외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자도 포함되도록 한바.

그 범위면에서 너무 포괄적이라고도 사료되나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이나 상한연령에 관하여는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점차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토론요지 : 생 략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